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686호

「주택법」 제51조제1항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1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업화주택 인정

- 인정업체 및 대표자 : (주)플랜엠 (대표자 이민규)
- 공장 소재지 : (22678)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84
- 공업화주택 명칭 : PLANM-H (공동주택)
- 주요 구성 재료 :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기둥·보, 철근콘크리트 슬래브, 메탈스터드 석고보드 벽체
- 사용부위 : 골조, 바닥, 벽체, 천장
- 주택용도 : 공동주택(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에 한함)
- 주택규모 : 지상 4층 이하
- 구조형식 : 철골구조
- 유효기간 : 2024년 5월 3일 부터 2029년 5월 2일 까지
- 주의사항
 - PLANM-H(공동주택) 공업화주택의 인정범위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호 나목 연립주택 및 다목 다세대주택에 한정하고, (주)플랜엠에서 제시한 설계도서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
 - 공업화주택(공동주택) 건설 시 에너지절감을 위한 냉·난방설비, 전기, 배관 및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하여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설하여야 함

- 내화구조인정서,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성능인정서, 차음구조 인정서 등의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, 동등 이상의 성능품질을 적용하여야 함
- 본 세부인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신청자가 제출한 최종 신청서에 따름